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무3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 서구의회 제101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2000. 12. 26 시장 승인을 받았으므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상무3지구 택지개발 사업단지 블록 및 도로를 경계로 조정
- 조정규모
 - 마루동에서 치평동으로 편입 : 182필지 113,447㎡

3.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상무3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병존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재산권 행사 등의 주민불편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법정동 및 그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 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구역을 설정하려면 자연적·지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행정기능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확정해야 하고, 주민의 행정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민주성의 요구를 또한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산업화·도시화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변화된 구역획정 기준에 맞추어 개편이 필요하게 되는 것도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근래에는 계속적인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의 추진에 따라 국토의 자연적·지리적 조건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생활권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괴리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생활권과 유리된 행정구역은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불편 등 여러 면에서 장애를 초래하므로, 행정기능의 충실화와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와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법정동 및 그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절차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구역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조 제3항),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규칙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제11조).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서구의회 제101회 임시회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의견서를 채택했으며 2000년 12월 26일자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동의 구역변경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의견요청과 법정 승인 등 관련 사전 절차를 거친 사항이라는 점과, 의회에서 경계변경을 승인한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